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19
----------	------------

제안연월일 : 2025년 4월 2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법령 표기 원칙에 맞게 수정하고, 행정기관의 명칭을 정식명칭으로 수정함.
-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은 학교 먹는물 관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먹는물 관리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른 지침 및 기준에 의해 이행되고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의 규정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제2조2호”를 “제2조제2호”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서울시교육감”을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
-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유아교육법」 제2조2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서울시교육감”을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u>서울시교육감</u>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u>서울특별시교육감</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계획) ① 학교장은 먹는물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① ----- ----- 수 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5.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을 먹는물 기준에 맞게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 목표 및 방향
2. 학교 노후 수도관 등 수돗물 관련 노후 시설 교체 지원
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검사 지원
4.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 지원
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관련 시설개선 비용
2.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비용
3. 저수조에 대한 청소 및 수질검사 비용
4. 그 밖의 위생적인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 비용

제6조(관리계획) ① 학교장은 먹는물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목표 및 방향
2. 학교 수돗물 관리
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관리
4. 학교 저수조 관리
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냉·온수기, 정수기 등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3. 그 밖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시설 등 폐쇄
2. 음용금지 및 근처 먹는물 시설에 대한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먹는물 관련 원인분석과 개선 조치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